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 일시: 2011.11.9(수) 조간,
<인터넷 11.8(화) 12:00 이후>
- ▶ 총 7 쪽 (붙임자료 포함)

❖ 외국인력정책과 과 장 민 길 수
사무관 최 승 찬

☎ 02-2110-7191, H.P 010-4055-248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, 재입국 더 쉽고 빨라진다

- 취업기간 내 자진 귀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실시 -

- ☐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부터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.
- ☐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취업기간(최대 4년 10개월)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.
- 그러나,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을 원해도 6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규정만 있을 뿐,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절차를 밟아야 했다.
- 특히 신규 입국자가 치러야 하는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있고 시험에 합격해도 입국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한국에서 더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귀국을 망설였던 것이 사실이다.
-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.

- 이에, 고용노동부는 재입국을 가로막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숙련 인력 고용에 대한 산업현장의 희망을 반영하기로 했다.
-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재입국이 좀 더 쉽고 빠르게, 제한 기간 경과 직후에 재입국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다.
- 특별한국어 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송출국별로 설치된 CBT(Computer Based Test)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.
- 합격자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,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된다.
-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종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.
- 특별한국어시험은 12월중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하며 내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.
-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“**이 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훨씬 줄어들고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고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**” 이라고 전망하면서, “**앞으로도 불법으로 체류하지 않고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**” 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자진귀국자 재입국 우대방안 1 부. 끝.

자진 귀국자 재입국 우대방안

— 특별한국어시험 시행계획 —

'11. 11

<목 차>

1. 검토 배경	1
2. 현행 재입국 관련 문제점	2
3. 재입국 우대방안	3
4. 세부 추진계획	4

외국인력정책과

1. 검토 배경

□ 재고용만료자의 급속한 증가

- 최근 재고용만료자 발생이 본격화되면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
-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고용만료자의 불법체류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

* 재고용만료자: ('10) 5,243명 → ('11) 33,941명 → ('12) 67,117명

□ 재입국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

-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 기간 제한(6개월) 규정만 있고 지원제도는 없는 실정
- 이는 취업기간만료자들이 예정대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

□ 숙련인력의 계속사용 요구

- 외국인고용 사업주들은 숙련기술을 가진 재고용만료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
- 그러나 재입국 여부가 불투명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, 입국하여도 출국전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

◇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올해안에 시행함으로써

⇒ 기간만료자의 자발적 귀국을 유도하고, 숙련 외국인력의 계속 사용을 요구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에도 부응할 필요

2. 현행 재입국 관련 문제점

□ 재입국 여부의 불투명성

- 현행 한국어시험은 국가별로 연 1~2회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출국하면 언제 재입국할 수 있을지 불투명
 - * '10년도에 15개 송출국 중 10개국에 17회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
- 수만 명에 달하는 일반응시생들과 같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도 존재
 - * '10년도 평균 응시생 13,052명, 제3회 네팔 한국어시험 응시생 57,457명

□ 재입국 기간 장기화 및 숙련인력 활용방안 부족

- (재입국기간 장기화) 통상의 절차에 따를 경우 한국어시험 합격 후에도 구직신청과 인증, 구직자명부 등재 및 사업주 선택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
 - * 구직신청에서 근로계약체결까지 평균 136일 소요('10년도 베트남)
- (숙련인력 활용방안 부족) 현재는 재입국자도 일반 구직자와 같이 지정알선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국전에 일하던 사업장에 재취업할 수가 없어 숙련기능을 활용할 기회 상실

□ 체류 경력자에 대한 중복 교육

- 한국체류경력 5년 전후인 재입국자에게 최초 입국자와 같이 기초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사전 취업교육을 받게 하는 불합리 존재

3. 재입국 우대방안

- ◇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(6개월)*은 유지하되,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총 도입기간을 줄이고 종전의 숙련기능을 계속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

* 성실 근로한 자에 대한 취업제한기간 단축은 법개정을 통해 별도 추진

□ 재입국자 대상 별도 시험 실시

- (특별 한국어시험 신설) 재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한국어시험을 신설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험 대기기간 단축
- (CBT 시험장 활용) 정기적인 시험 실시 및 자진귀국유도를 위해 특별한국어시험은 현지에 설치된 상설 CBT 시험장에서 별도 실시

* CBT 시험 가능 국가: 태국, 베트남, 캄보디아, 방글라데시, 파키스탄

□ 재입국 기간 단축 및 숙련기능인력 활용 지원

- (재입국 기간 단축) 재입국대상자를 별도로 분류, 구직신청 및 인증을 우선 실시하여 구직자명부 등재기간을 최대한 단축
- (지정알선 허용) 최종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알선을 허용함으로써
 - 근로계약 체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, 출국전 습득한 기능을 계속 활용토록 하여 기업의 요구에도 부응

□ 입국전 사전교육 면제

- (현지 취업교육 면제) 한국어 등을 강의하는 입국전 취업교육을 면제함으로써 재입국기간을 단축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

* 사전 취업교육기간 1~2주, 평균 비용 96.7 USD

4. 세부 추진 계획(개요)

□ 시범 실시 대상 국가

- 재고용기간 만료 대상자수가 많고, 상설(CBT) 시험장이 설치된 태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실시 후 확대 시행 검토

□ 특별한국어시험 시행계획

- 시험명: 재입국희망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
- 응시자격
 -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기간내 자진귀국한 자
 - * 시범실시중에는 취업기간 만료일 이전에 불법체류없이 출국한 자('10.1.1.이후 출국자)로만 한정하되,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 만료후 추가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자 등의 포함 여부는 추후 결정
 - 응시가능 연령: 18세 이상 39세 이하(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)
- 추진 일정(안)
 - 11월 초순 공고, 11월중 원서접수후 12월중 시험 실시
 - * 시험기간은 접수인원에 따라 조정
- 시험공고: 송출국 신문 및 송출기관 웹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
- 원서접수: 응시자격 확인 및 별도 구분 관리
 - (수험자) 자진귀국자임을 응시원서에 표시
 - (송출기관 원서접수) EPS 영문홈페이지에서 응시 적격여부 조회 후 한국어시험홈페이지(epstopik.hrdkorea.or.kr)에 입력
- 문제출제: 응시생들이 다년간 한국체류 경험자임을 감안하여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출제로 시험의 변별력 제고